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제안연월일: 2024. 12.

번호 제 안 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회의정보
원자 력 안전 법 일부 개 률 안	2202464	박지혜의원	2024. 8. 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2024.11.27.) 상정
	2203741	최민희의원	2024. 9. 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2024.11.27.) 상정
	2204408	박충권의원	2024. 9. 2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2024.11.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2024.11.27.) 상정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4.11.27.)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 2.)에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 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운영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해당 시설을 계속 운전할 수있도록 하는 계속운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규정하고있지 않음. 이에 계속운전의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부과·징수 근거를 두고 있어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부담금의 부과목적을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그리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의사유 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원자력기금 원자력 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등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영(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 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목적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변경함(안 제111조의2제1항).
- 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를 체납된 부담금의 20%로 하향 조정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부담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11조의3).
- 라.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로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안전문화 확산, 한국원자력안전재 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

성・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추가함(안 제111조의4제2항).

법률 제 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정성평가에"를 "설계수명이만료되어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하거나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방법"을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제2호 중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를 "계속운전하기"로 한다. 법률 제20533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제1항 중 "제 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 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를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승인·신고·등록·사전검토·교육훈 런 또는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 는 파독업무자
-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 1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핵물 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제111조의3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태료"를 "과 태료(과태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분석
-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 12.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 제 7조의2에 따른 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 1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 15. 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원자력 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 용원자로운영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제30조의2제4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11조의3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허가기준) ① · ② (생	제21조(허가기준)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 '' - '신 설>	③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_ `	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
	(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
	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
	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
	출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
	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발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	
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설계수명이 만료되어 제
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	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하거나
주기적 안정성평가에 필요한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발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주기
	적 안전성평가에

안 혅 행 개 정 ② (생 ② (현행과 같음) 략)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③ -----주기적 안전 평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 성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① 다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 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 제5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63 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 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 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 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 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현 행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u>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생 략)

② ~ ⑤ (생 략)

법률 제20533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
금 등) ① 위원회는 제111조제
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
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
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있다.

<신 설>

- ______
- 1. (현행과 같음)
- 2. <u>계속운전하기</u>-----

- 3.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633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
금 등) 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방사
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

 1.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승인・신고・등록・사전검토

 ·교육훈련 또는 수출입요건

현 행	개 정 안
	확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
	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
	<u>자</u>
<u> <신 설></u>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
	업자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생	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②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u>「국세기본법」</u>	<u>납부기한의 다음</u>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
을 징수한다.	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u>하는 바에 따라</u>
	<u>.</u>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위원회는 부담금 납부 의무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현 행	개 정 안
	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u>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u>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
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	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
도) ① 「원자력 진흥법」 제1	도) ①
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	
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u><삭 제></u>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3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u>과태료</u>	<u>과</u> 태료(과태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다음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
	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
	<u>구・분석</u>
<u>5.</u> ~ <u>8.</u> (생 략)	<u>6.</u> ~ <u>9.</u> (현행 제5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
10.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
문기관 및 제6조에 따른 통제	런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기술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u>문화 확산</u>
<u>기본경비</u>	
<u>9.</u> (생 략)	<u>11.</u> (현행 제9호와 같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12.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
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	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제기
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	술원, 제7조의2에 따른 안전
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u>기본경비</u>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u>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u>	
<u><신 설></u>	1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
	1항 단서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u>11.</u> (생 략)	<u>14.</u> (현행 제11호와 같음)
<u><신 설></u>	<u>15.</u> 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

현 행	개 정 안
	안전, 원자력 통제 및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
	재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 사항</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